

中土技術士會 會則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 본회는 중토기술사회(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기술사회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 적)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
2. 회원의 복리증진과 발전
3. 회원 상호간의 기술교류와 협력
4. 모교 발전 기여 사업

제 3 조 (사 업)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목표를 설정한다.

1. 기술에 관한 간담회, 견학, 사찰
2.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섭외
3. 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교환
4. 기술집약체 형성 및 특수사업에 대한 공동대처
5. 직계준비숙의 경조사
6. 모교 동문장학금 기부
7. 2차적인 사업목표로 중토기술사회 사무소 및 중토기술사회관 건립
8. 기타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4 조 (회원의 자격) 본회 회원의 자격은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사자격을 득한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.

제 5 조 (자격정지) 특별한 사유없이 회원으로서 계속해서 5년 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6 조 (임 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고 문 ————— 약간 명
1. 회 장 ————— 1 인
1. 부 회 장 ————— 2 인
1. 총무 및 부총무 ————— 3 인 (총무 1인, 부총무 2인)

1. 간 사 _____ 기술사 종목별 1명 (단 시공기술사 종목은 2명)
1. 감 사 _____ 2 인

제 7 조 (임원선출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1. 고 문 : 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되며 약간명의 고문을 임원회의에서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할 수 있다.
2. 회 장 : 총회에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토론없이 투표에 붙여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.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순으로 2인에 대해 결선투표로 결정한다.
3. 부 회 장 : 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.
4. 총 무 :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.
5. 간 사 :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임원회의에 보고한다.
6. 감 사 :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.

제 8 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

1. 고 문 : 종신제로 한다.
2. 회장 및 부회장 : 2년 단임으로 한다.
3. 총무 및 간사 :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4. 감 사 : 2년 단임으로 한다.

제 9 조 (임원의 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고 문 :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무전반에 대해 자문한다.
2.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3. 부 회 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총 무 :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계업무 일체, 회원간의 유기적 연락, 정보교류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.
5. 간 사 : 총무와 협조하여 회원간의 유기적 연락, 정보교류 업무를 담당한다.
6. 감 사 : 감사직무를 수행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 10 조 (회 의)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정기총회 :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그 일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통보하며 재적회원의 5분의 1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.

2. 임시총회 :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회원의 5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.
3. 임원회의 :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.
4. 총회의 의결사항
 - (1)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 - (2)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- (3) 임원선출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- (4)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 - (5) 총회의결은 출석과반수의 의결로 한다.

제 11 조 (친목회의)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1, 3, 5, 7, 9, 11월 셋째 금요일에 회합한다. 동호인 모임은 해당 운영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 회합을 가지고 회합내용을 총무 경우 회장에게 보고한다.

제 5 장 재 정

제 12 조 (회 비) 본회의 회비는 2003년을 기준으로 입회비 10만원, 월회비 15,000원으로 하되 매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일정률로 인상하는 것을 임원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.

제 13 조 (특별기금) 본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기금을 납입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찬조금) 본회의 재정은 찬조금으로 추가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친목회비) 친목회의 및 동호인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당일 참석자가 부담하되 일부에 대해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 6 장 보 칙

제 16 조 (예산 및 결산) 회장은 매년도 예산, 결산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보고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7 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 1장 제 3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.

제 18 조 (명예회원) 본회의 명예회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회비는 부담치 않는다.

1. 본회의 회원으로서 연로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회원

2.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자

3. 명예회원은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.

제 19 조 (회칙개정)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0 조 (운영규칙)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운영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.

· 2000. 3. 24 재정

· 2004. 3. 18 1차 회칙개정

· 2009. 11. 20 2차 회칙개정 (모임요일 변경)